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. 6. 11 선고 2014가단727 판결 [건물철거및토지인도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15. 8. 17 선고 2014나103785 판결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. 6. 11 선고 2014가단727 판결

전문

원고1. A종중

2. B

피고C

변론종결 2014. 5. 28.

판결 선고 2014. 6. 11.

주문

1. 원고 A종중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.
2.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, 22, 23, 24, 26, 27,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73㎡,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, 29, 30, 31,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9㎡, 19, 20, 21, 27,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14㎡, 24, 25, 26,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ㄷ' 부분 3㎡,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, 11, 12, 13, 14,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87㎡, 15, 16, 17, 18,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22㎡ 각 지상의 건물을

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3. 소송비용 중 원고 A종중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종중이 부담하고,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.
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 A종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214m²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이 유

1. 원고 A종중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원고 A종중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해 그 지상에 미등기건물을 소유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지상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데,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총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 살피건대,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,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한 것인데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6다64573 판결 참조), 위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.

2.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갑 제1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

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내지 제4항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이 원고 B의 소유인 사실, ② 피고는 이 사건 제2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, 22, 23, 24, 26, 27,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73m², 제3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, 29, 30, 31,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9m², 19, 20, 21, 27,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14m², 24, 25, 26,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ㄷ' 부분 3m², 제4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, 11, 12, 13, 14,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87m², 15, 16, 17, 18,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22m²의 각 지상(이하 '이 사건 점유 부분'이라 한다)에 존재하는 미등기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 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부친인 망 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시절 신축한 것인데, 이후 원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달라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고, 피고가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함께 상속받았으므로,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망 D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고 소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 A중중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,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안민영

별지